르 습지로 구분하였고, 문화적 요소로는 문화유산, 복합유산, 람사르 습지도시로 구분하였다.

국내법규인 습지보전법, 문화재 보호법, 산림법도 생태적 요소로 습지보호지역, 기념물, 산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등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적 요소로는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유형, 무형 문화재, 민속문화재,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의 내용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생태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9>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 내 생태적, 문회적 요소의 구분

구분	관련기관	생태적 요소	문화적 요소	기타
국제협약	유네스코세계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스르협약	람사르습지	람사르습지도시(제12 차 람사르총회)	람사르협약
국내법규	환경부(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문화재청(문화재보호 법)	기념물	유형, 무형 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산림청(산림법)	산림,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수목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산림법 제2조

2010년대 국내 도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정원과 문화를 하나로 합친 '정원문화'로 서울정원박람회, 경기정원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정원문화를 확대를 힘쓰고 있고, 또한 산림과 문화를 합친 '산림문화'로 국가 산림문화에 대한 자산관리, 관광, 교육, 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역사,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전통문화', '역사문화'를 말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농촌(생태)어